#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8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조 국·김준형·김선민

강경숙 · 정춘생 · 박은정

서왕진 · 김재원 · 황운하

신장식 · 이해민 · 차규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안으로 파악되지도 않으므로 파일을 열어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할 수 없음.

이처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정보를 종래 유체물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선 별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탐지되어 수집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는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영 장으로 변모시켜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허물어 버릴 위험마저 존재함.

이에 종래 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규율하여 온「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이러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법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입숙·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

- 일을 복사하는 선별압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집행계획 검토 등 영장 발부 요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관련된 정 보를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심문하는 등 사전대면심문을 할 수 있음 (안 제6조).
- 바. 수사기관등은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과정을 촬영하는 등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 사. 수사기관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무관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

나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자는 형사 처벌되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음(안 제9조및 제15조).

- 아.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압수자 그리고 정보저장매체등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복제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실질적 피압수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10조).
- 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 보관정보와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적용·준용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컴퓨터용디스크, 휴대전화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를 말한다.
  - 2.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3.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하드카피·이 미징 등 형태로 전부 복제한 것을 말한다.
  - 4. "해시값"이란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하기 위한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 5. "실질적 피압수자"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복제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 피의자,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전자정보 압수 · 수색의 원칙

- 제3조(전자정보의 수색과 압수의 분리)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정보의 선별압수·수색 원칙) ①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 등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 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 제3장 전자정보 압수 · 수색영장의 청구와 심리

- 제5조(영장청구 시 집행계획 제출과 심리)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등"이라 한다)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압수·수색등 영장청구를 받은 법원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와 중요성, 압수물이 인멸·훼손될 위험성 유무, 압수에 의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압수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 ③ 법원은 압수·수색 청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방법 및 압수대상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현장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압수자의 특성, 정보의 종류, 긴급성의 정도 등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방법을 현장 선별압수 또는 복제본 반출로 한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6조(사전대면심문) ① 법원은 압수·수색등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집행계획 검토 등 영장발부 요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심문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압수·수색등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대면심리의 필요성, 사생활 및 기본권의 침해 정도,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및 수사의 보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심문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보정명령) ① 법원은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검색어, 검색기간 등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색어, 검색기간 등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명령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압수수 색의 필요성과 상당성 흠결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제4장 전자정보 압수 · 수색등의 집행

제8조(전자정보의 선별) ① 수사기관등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 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하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피압수 자등이나 변호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무관정보의 삭제·폐기 등) ① 수사기관등은 제8조제4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가 있는 경우해당 전자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하다.
  - ②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에게 무관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의 취지를 통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10조(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진술) ① 검사, 피압수자, 실질적 피압수 자 그리고 변호인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그리고 제1항에 규정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지체 없이 집행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경우 수사기관등은 집행개시 전에 현장 선별압수의 원칙, 임의제출의 거부가능성 등 압수·수색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 사본, 참여확인서 및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등은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출력 과정을 포함하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제1항에 규정한 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자가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타 절차의 특례

- 제11조(제3자 보관정보의 압수·수색) 수사기관등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 발부, 집행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임의제출물의 압수) ① 수사기관등이 임의제출물인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피압 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등은 임의제출에 앞서 피압수자에게 범죄 혐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사기관등은 전자정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법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할 수 없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 제6장 벌칙

제15조(무관정보 미삭제·폐기죄)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자와 무관정보를 누설하거나 누 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